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6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고민정・박정현・이훈기

추미애 • 조인철 • 김동아

문정복 • 김준혁 • 장철민

임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교학점제 도입으로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 ·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 점을 취득 · 누적하여 졸업함.

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최대한 개설할 수 있어야 하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가 부족한 과목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수업을 개설하기가 어려움.

이에 학교의 장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·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연계 및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(안제48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학과 및 학점제 등) ① ~	제48조(학과 및 학점제 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
	교의 장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
	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간
	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
	<u>다.</u>
<u>④·⑤</u> (생 략)	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
	과 같음)